

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644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8. 28 | 고 성 군 수 |
| 나. 회 부 일 자 : 2000. 8. 29 | |
| 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9. 4 |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 |

2. 제안이유

-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상위법 폐지로 근거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행위의 허가 및 제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.(안 제6조)
- 나. 권리양도의 제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.(안 제8조)
- 다.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.(안 제12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를 행정자치부의 2단계 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동조례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지나
-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삭제 대상 제6조제1항2호(공작물의 설치), 3호(물품판매 등 상행위)가 문란할 시 행정적 조치사항과 제12조4호(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자)에 대한 행정적조치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현실정에 맞도록 조정의 필요성 등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개정조례안 제6조(행위의 허가 및 제한), 제8조(권리양도의 제한), 제12조(입장거절 및 퇴장) 등을 삭제하게 되면 공공질서 위반자를 통제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?
- 답 : 공공기물 파손시는 다른 법령에서 질서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없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0. 9.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